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주관기관의 소관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의무를 규정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주관기관이 점검 결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재외공관이 유상협력을 제외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에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II. 검토의견

1. 재외공관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 현황 보고 관련 부처 이견

- 안 제23조제3항은 재외공관이 유상협력을 제외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연 1회 이상 파악해 그 결과를 주관기관¹⁾을 거쳐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원회는 보고받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임.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관기관”이란 제12조에 따라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 기획재정부는 재외공관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중 유상협력사업 추진 상황 별도 파악과 기획재정부에 대한 보고는 오히려 사업추진 동력을 저하시키고 현장의 혼선만 초래할 우려가 크고, 현재 유상협력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주관)와 수출입은행(위탁)이 운용·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타 법에서 추가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중복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개정안과 동일하게 안 제23조제3항에서 유상협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국무조정실은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40% 내외를 차지하는 유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보고를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경우 조항 신설 취지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 강화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재외공관의 현황 파악 결과를 주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안 제23조제3항에서 유상협력을 포함해야 하며,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대외경제협력기금법」에 우선 적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그 밖에 체계·자구를 검토한 결과, 법문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 병 섭)